

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
일부 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토교통부 (공공주택정책과)
연 월 일	2023. 12. 22.

1. 개정이유

훈령의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라 지속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(안 제99조 개정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토교통부훈령 제1689호

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

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9조의 “2023년 12월 31일까지”를 “2026년 12월 31일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99조(존속기한) 이 훈령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<u>2023년 12월 31일까지</u> 효력을 가진다.</p>	<p>제99조(존속기한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<u>2026년 12월 31일까지</u>--- -----.</p>